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3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설 명 자 : 건설과장 송기채
- 나. 개 정 사 유
 - '97. 7. 1 대통령령 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8조의 소액부징수 내용을 토대로 개정함.
- 다. 주요내용
 -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및 조례를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통합 운영하며 금회 개정된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령 제 26조의 3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8조의 점용료 소액부 징수에 있어서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5,000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된 내용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면서 동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규칙을 통합한 내용인바, 동 조례 개정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78
----------	-------

제출년월일 : 1997. 5. 2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 안 이 유

- 기 제 정 운 영 되 고 있 는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통합 반영하여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로 전문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부과대상의 범위

- 점 용 료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 과 태 료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한 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

나. 점용료의 산정기준

- 도로법시행령 "별표 2"와 동일하게 산정

다. 점용료 및 과태료 감면의 범위

- 점 용 료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비영리 사업
- 과 태 료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라.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86조의 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 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

사업의 경우에 한 한다)

5.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은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은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도로의 점용이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 (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한다.

제10조 (부당이익금의 징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 ①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도로법 제86조의 2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도로법 제86조의 2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등) ①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도로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13조 (의견 진술)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 통지등) ①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시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화순군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2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 징수) ① 도로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무단 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16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 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과태료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반복부과) 도로를 무단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20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1. 11. 19 조례 제1196호) 및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91. 11. 19 규칙 제640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 송전탑 기타와 유사한것	전 주		1개	1년	600
	전 주 와 유 사 한 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 전기관 ·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와 유사한것	수도관· 하수도관 · 전기관 ·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직경 0.1미터이하	길 이 1미터	1년	15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0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6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90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20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500
		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2,250
		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750
	기타의관	직경 0.1미터이하	길 이 1미터	1년	20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45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9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35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800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길 이 1미터	1년	2,250
		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3,350
		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5,600
		직경 3.0미터초과			7,850
3. 광고탑· 광고관· 광고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기타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관·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0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 타 의 용 도			1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	1년	30,000
		기 타			15,0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장· 소화물· 대적장· 휴게소기타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 층 인 건 축 물	점용면적 1㎡	1년
2 층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55 를 곱한 금액		
3 층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6 을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 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 금액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6.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것	건 축 물	1 층 인 건 축 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 를 곱한 금액		
		2 층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17 을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7. 노점·자 동판매· 상품진열 대 기타 이와유사 한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 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관자벽· 발판· 대기소 등 의 공사 용시설 및 재료	일 시 점 용 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200	1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 호의 공 작물·물 건및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m²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 = 1,400원, 1,995원 = 1,950원)

6.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 6의 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신설 '94. 12. 29 조 1362)

7.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5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text{전년도 점용료} + [\text{전년도 점용료} \times \{10/100 + (\text{증가율} - 10/100) \times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	$\text{전년도 점용료} + [\text{전년도 점용료} \times \{13/100 + (\text{증가율} - 20/100) \times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text{전년도 점용료} + [\text{전년도 점용료} \times \{16/100 + (\text{증가율} - 50/100) \times 6/100\}]$
100퍼센트이상200퍼센트미만	$\text{전년도 점용료} + [\text{전년도 점용료} \times \{19/100 + (\text{증가율} - 100/100) \times 3/100\}]$
200퍼센트이상500퍼센트미만	$\text{전년도 점용료} + [\text{전년도 점용료} \times \{22/100 + (\text{증가율} - 200/100) \times 1/100\}]$
500퍼센트이상	$\text{전년도 점용료} + [\text{전년도 점용료} \times \{25/100 + (\text{증가율} - 500/100) \times 5/1000\}]$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징수 결정 자료부

연번	납부의무자		위반조항	위반행위	과태료액	비고
	주소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수납부

연번	납부의무자		납부통지일		납부기한		금액	과태료 수납일	비고
	주소	성명	당초	독촉	당초	독촉			

[별표 3]

과태료 부과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점용면적 3.3㎡미만		점용면적 3.3~6.6㎡미만		점용면적 6.6~10㎡미만		점용면적 10㎡미만	
	읍지역	면지역	읍지역	면지역	읍지역	면지역	읍지역	면지역
1. 도로상에서 상품 이나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	12,000	8,000	24,000	16,000	36,000	24,000	48,000	32,000
2. 도로상에서 시설 물을 설치하여 사 용하는 행위 (공사장 포함)	30,000	20,000	60,000	40,000	90,000	60,000	120,000	80,000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작업행위	24,000	16,000	48,000	32,000	72,000	48,000	96,000	64,000
4. 기타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6,000	4,000	12,000	8,000	18,000	12,000	24,000	16,000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수납기관보관용)

(도로무단점용)

발행 번호		
남	성명 (대표자)	
부	주소 (회사명)	
자		
위반 일자		
위반 행위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납부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수납인

과태료영수필통지서(군보관용)

(도로무단점용)

발행 번호		
남	성명 (대표자)	
부	주소 (회사명)	
자		
위반 일자		
위반 행위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화순군수 귀하 수납인

과태료납부영수증(납부자보관용)

(도로무단점용)

발행 번호		
남	성명 (대표자)	
부	주소 (회사명)	
자		
위반 일자		
위반 행위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과태료납부통지서수령증

(도로무단점용)

발행 번호		
남	성명 (대표자)	
부	주소 (회사명)	
자		
위반 일자		
위반 행위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성명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독촉장(수납기관보관용)

(도로무단점용)

발행번호		
남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남부금액		
남부기한		
남부장소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지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때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년 월 일
회순군수 수납인		

과태료영수필통지서(군보관용)

(도로무단점용)

발행번호		
남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남부금액		
남부기한		
남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회순군수 귀하 수납인		

과태료납부영수증(남부자보관용)

(도로무단점용)

발행번호		
남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남부금액		
남부기한		
남부장소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독촉장수령증

(도로무단점용)

발행번호		
남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남부금액		
남부기한		
남부장소		
위 내용의 과태료 독촉장을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성명		(인)
회순군수 귀하		